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요와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조성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노인일자리 분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구미시니어클럽》

가. 사무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운영

나. 추진근거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위탁사무 : 구미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지정일	現운영법인
구미시니어클럽	문장로12안길 4	6명	2002.08 *보건복지부지정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전담인력 25명 별도

마. 위탁기간 : 5년(2026.1.1. ~ 2030.12.31.)

바. 소요예산 : 475백만원(도 10%, 시 90%)

※ 시설인력기준 시설장 포함 6명에서 8명으로 변경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가. 사무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2) 「동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다. 위탁사무 :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전반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취업지원 체계화를 통한 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민간 노인일자리 알선
-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지정일	現운영법인
구미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문장로12안길 4	4명	2007.09 *경상북도 지정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전담인력 8명 별도

마.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바. 소요예산 : 222백만원(도 10%, 시 90%)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3. 부서 의견

- 가. 구미시니어클럽은 2002년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구미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는 2007년 경상북도 지정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그간 별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 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위탁계약을 미체결 하여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으나, 지방계약법 등 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추진이 필요하며,
- 다. 지역 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 관리 및 교육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수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관계법령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구미시니어클럽》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민간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차 연도부터 사업비 매년 인상률 3%로 반영함
- 구미시니어클럽의 경우 시설인력기준이 6명에서 8명으로 변경됨을 반영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475,000	489,250	503,928	519,045	534,617	2,521,840

###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47,500	48,925	50,393	51,905	53,462	252,185
시 비	427,500	440,325	453,535	467,140	481,155	2,269,655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475,000	489,250	503,928	519,045	534,617	2,521,840

###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 오윤창(☎480-5156)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금 액	비 고
합 계	총계	475,000	
인건비	소계	425,230	
	급여	314,808	8명(관장 1, 직원 7)
	가족수당	3,840	
	명절휴가비	31,481	
	연장근로수당	10,320	
	사회보험료	34,903	
	퇴직적립금	29,878	
운영비	소계	42,920	
	기관운영비	4,68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5,400	
	회의비	2,400	운영위원회회의수당, 회의자료 등
	여비	2,800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9,198	사무용품, 복사기, 정수기 등
	공공요금	5,580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6,462	차량보험, 화재보험 등
	사무실임차료	4,800	
	차량유지비	1,600	
사업비	소계	6,850	
	자원봉사활동비	700	
	직능개발비	1,150	종사자교육비(교육참가비)
	참여자사회참여프로그램	4,800	
	홍보비	200	

##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민간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차 연도부터 사업비 매년 인상률 3%로 반영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221,670	228,320	235,170	685,160

####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비	-	-	-	-
도비	22,167	22,832	23,517	68,516
시비	199,503	205,488	211,653	616,644
민간	-	-	-	-
기타	-	-	-	-
합계	221,670	228,320	235,170	685,160

####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 오윤창(☎480-5156)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금 액	비 고
합 계	총계	221,670	
인건비	소계	178,346	
	급여	133,611	4명(센터장 1, 직원 3)
	가족수당	2,580	
	명절휴가비	13,361	
	사회보험료	16,331	
	퇴직적립금	12,463	
운영비	소계	31,269	
	기관운영비	24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4,200	
	회의비	2,010	운영위원회의수당, 회의자료 등
	여비	4,000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7,669	사무용품, 복사기, 정수기 등
	공공요금	5,820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1,930	차량보험, 화재보험 등
	사무실임차료	4,800	
	차량유지비	600	
사업비	소계	12,055	
	노인일자리박람회	7,000	
	직능개발비	2,400	종사자교육비(교육참가비)
	강사비	1,400	
	연수비	460	
	도서비	795	

소 관 부 서		어르신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창 수
	팀 장	김 율 자
	담 당 자	오 윤 창 (480-5156)